

---

## 2007 美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EU의 통신시장 무역장벽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김성웅  
(T. 570-4436, woongnice@kisdi.re.kr)

### 1. 개 요

한미 FTA 타결 이후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에<sup>1)</sup> 의거하여 캐나다, ASEAN과의 FTA를 연내에 완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과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를 기초로 거대경제권 국가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대륙별 거점국가와의 FTA 네트워크 형성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sup>2)</sup>

지난 5월 1차 협상, 7월 2차 협상을 완료한 EU와의 FTA는 우리에게 FTA 네트워크 형성을 완성함과 동시에, 한미 FTA 이후 중국, 일본 이전에 또 하나의 '거대경제권과의 FTA' 및 한미 FTA 협상으로 축적된 '협상력의 시험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리한 협상 위치는 상대국의 문제점 파악에서 시작되는 바, 미국과의 협상 경험을 토대로 EU와의 통신분야 협상에 있어 상호간 법,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sup>3)</sup>는 전반적으로 EU 개별 회원국의 통신 분야 무역상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해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무역관심대상국에게 현재 및 향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그대로를 우리측 협상 전략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나, EU 역내회원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매년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측에 참고자료

- 
- 1) 2003년 8월 수립한 'FTA 추진 로드맵'에서 정부는 미국과 중국, EU를 대상국으로 정하고 그동안 관련절차를 진행해왔으며,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로드맵은 경제적 이익과 산업 시스템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대 선진경제권(미국, EU)과의 FTA 협상에 주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을 가진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FTA를 통해 신규 소비시장 확보 및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김한수 FTA 추진단장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우리나라 총 수출의 60% 이상이 무관세나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로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3) NTE 보고서는 美 USTR(무역대표부)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의거하여 주요 수출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 수입정책, 무역 및 투자관행 등을 분석해온 보고서로서, 금년에는 총 63개 주요 교역대상국 및 경제권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로서의 시사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무역장벽보고서 중 IT 분야에서 EU 회원국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 2. 2007 미무역장벽보고서 IT 분야 주요내용

### 가. 배경

EU의 확대(enlargement)로 인해 EU 지침(Directive)을 새로운 역내회원국<sup>4)</sup>에 국내적용 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원국이 EU 공동체에 포함됨으로써 미국과 같은 역외국에 이전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 발생 및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 나. WTO 정보기술협정

미국은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일부 첨단기술 상품<sup>5)</sup> 수입에 14% 관세를 적용하지는 EU의 제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모든 ITA 회원국은 동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나, EU는 무관세 적용 상품의 정의 및 범위와 그 예외 적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즉, 현재 사실상 판매되지 않고 있는 기술수준이 미달되는 상품에만 관세 예외를 한정하자고 EU가 제안하였다. 그러나 동 상품의 정의는 ITA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범위가 매우 좁아 ITA에 언급된 거의 모든 형태의 상품은 EU로 수입될 때 무관세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은 이같은 종합적 문제에 대해 EU와 WTO ITA위원회에 우려를 제기하고, EU가 ITA의 조항과 그 정신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 다. 통신서비스 시장접근

WTO 기본통신협정과 EU 통신서비스 규제체계 하에서 모든 EU회원국들은 음성통신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을 양허해야 한다. 그러나 망세분화, 선공유, 설비병설(co-location) 등의 제공 및 가격 결정과 전용회선 공급에 있어 EU 다수 국가의 시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몇몇 회원국의 불공정한 통신사업자 소유도 진입장벽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4) 2007년 1월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신규 가입으로 현재 27개국.

5) cable box와 같이 통신기능을 갖춘 셋톱박스(set-top-box), 컴퓨터용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디지털 정지화상(still image) 비디오 카메라, 자동정보처리 기기(다기능 혹은 all-in-one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와 같은 상품이 이에 해당.

2002년 EU는 회원국 정부규제당국(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NRA)의 역할을 규정한 기본지침(Framework Directive)을 포함한 전자통신의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였다. 4가지 특별지침(인가,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정보보호)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2003년에 새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체제는 전통형식인 유선전화망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전자 통신망 및 관련서비스에 적용되며, 경쟁원칙에 기초하여 장기적으로 부문특정적, 사전적(ex-ante)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회원국 관행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절차가 신속한 법집행을 힘들게 하고 있고, 독일,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의 기존 사업자들은 국가 규제당국의 결정에 의미없는 항소를 함으로써 경쟁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EU 주요회원국 각각의 통신시장에 대해 USTR이 제기한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EU 주요회원국 통신시장 관련 USTR의 요구 및 지적사항

국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회선 도매시장, 전화 주파수 분배, PSTN(공중전화망) 전송서비스 시장, 상호접속 요금 및 광대역접속 도매시장에 대한 정의 부재, 건물로의 통신인프라 접속 제한 등에 우려를 제기함</li> <li>- 규제당국(NRA) 결정에 대한 의무 이행이 불확실하고 느린 점 지적</li> </ul>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렬한 경쟁과 엄격한 규제환경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함</li> <li>- 핀란드 통신규제당국(FICORA)의 시장지배적사업자(SMP)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항소함으로써 시간을 지연시키고 규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함</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프랑스항소법원은 France Telecom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ADSL인터넷 경쟁공급자의 접근을 막은 행위에 대해 8천만 유로 벌금형 판결함</li> <li>- 시장의 경쟁적 구도가 FT의 지배적 지위를 서서히 줄이고 있다고 설명</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개정된 통신법 9a조에서 새로운 시장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 휴일(regulatory holidays)"을 부여하였고 Deutsche Telecom은 예외를 얻기 위해 로비함. 경쟁사업자들은 9a조가 값비싼 섬유광학망을 설치한 DT를 사실상 보호하는 막으로 작용함에 이의 제기하였고, 미국은 동 조항으로 인해 유사한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어 사실상 독점화됨을 지적</li> </ul>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 부족과 법적 장애물로 인해 충분한 경쟁조건이 미흡</li> <li>- 2005년 Matav와 T-brands의 인수 합병으로 탄생한 Magyar Telekom의 지배적 위치가 더욱 공고해짐</li> </ul>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 독점기업 Telecom Eireann이 1999년 Eircom으로 민영화하였으나, 유선시장 74% 점유율, 전용회선 및 상호접속 시장 지배, 높은 국내 서비스 공급가격을 유지하고 있음</li> </ul>

국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룩셈부르크 이동통신 시장 경쟁개방을 판시한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3개 기업에(하나는 국영기업이 부분소유) 의한 통신시장 지배구조가 지속됨</li> <li>- EU 기본지침 이행을 위해 행정조치를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통신시장의 국영기업(P&amp;T) 지배구조 지속</li> </ul>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 및 인터넷 분야 투자 수준은 높지만, 여전히 새로운 시장진입자의 경쟁력이 미흡한 바, 이는 폴란드의 전자통신사무소(UKE)가 EU 기본지침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UKE는 통신사업자인 TPSA의 독점적 사업관행과 관련 TPSA와 협력루기 중)</li> </ul>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회선 요금이 원가기반적으로(cost-based) 산출되지 않아 문제</li> <li>- 국가규제당국(CMT)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이 유럽 평균치보다 높고 미국보다 100%가량 높아서, 결국 Telefonica가 경쟁사업자보다 낮은 요금으로 공급 가능하여 다른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커짐</li> <li>- 이동통신 사업자의 과도한 접속요금 부과로 인해 미국측 운영자들이 fixed-to-mobile 통신 시장에서 착취당하고 있음을 지적</li> <li>- 광대역 시장의 발전이 더딤을 지적하고, Telefonica의 지속적 시장 지배로 새로운 진입자들이 사실상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li> </ul>
2007년 보고서에서 지적사항이 사라진 국가들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보고서에서 Telecom Italia 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문제와 국가규제당국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2007년 보고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음</li> </ul>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 보고서까지 리투아니아 정부의 입찰 견적서 발행 지연 등을 지적했으나, 2007년 보고서에서는 언급 없음</li> </ul>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보고서에서 EU 지침 불이행, 규제기관의 지연 회신, 긴 항소 절차, 국영기업(Telekom Slovenije) 자회사(Mobitel)의 불공정한 가격 책정 문제가 지적당했으나, 2007년에는 언급없음</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기존사업자인 Telia Sonera의 EU지침 불이행 및 자회사 특혜 문제 제기했으나 2007년 보고서에서는 언급 없음</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데이터서비스 분야에서 기존사업자인 BT와의 경쟁에 제한이 있음을 지적했으나 2007년 보고서에는 언급 없음</li> </ul>

### 라. 전자상거래

미국 정부와 사업자들은 EU의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데이터프라이버시(data privacy) 규정 및 법적 책임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바, EU로부터의 개인정보수출에 대해 지적하였다.

EU 개인정보지침(1995/46)<sup>6)</sup>은 제3국으로의 EU 데이터 전송을 허가하고 있다. 단, 적당

6) Chapter IV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한 보호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유럽위원회가 간주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동 지침의 적절성 요건(adequacy requirement)에 대한 예외를 원용하거나 혹은 전송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만 EU로부터 고용인과 소비자의 정보만을 받을 수 있다. 동 요건이 유럽과의 정보 교환에 의존하고 있는 다수 미국 산업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적절성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을 제공해주는 Safe Harbor<sup>7)</sup>의 틀에 대해 협의하고, 미국으로의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EU위원회와 회원국들이 EU정보보호지침상의 융통성을 지속 활용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와 회원국들이 미국으로의 정보 흐름 방해를 인식하는 즉시 미국에 통지하도록 요구하였다.

### 3. 결 어

2007년 3월 발표한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는 EU내 주요 회원국의 국내법, 제도, 관행상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표 1〉 참조). 2005년~2007년 까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기도 하고, 2007년에 새로운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EU 지침 및 규제 의무의 국내 이행, 비용부과원칙, 시장 지배구조,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접근의 차별성 등 경쟁성(competition)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었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수준 및 경쟁성이 높다고 간주되는 EU도 실제 역내시장 현황 즉, 회원국 국내 관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년 9월 EU와 제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전략적인 협상안 준비 및 발굴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U라는 단일체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우리로서는 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EU 개별 회원국의 비경쟁적인 요소가 협상 전략 마련에 좋은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겠다.

---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2002/58/EC 프라이버시 지침 제23조(정보의 교환)에도 규정되어 있다.

7) 동 협정은 일련의 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미국기업들이 EU로부터 개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속 이행 실패가 공정거래위원회(FTC)법 5조 혹은 교통부 규정에 의거하여 곧바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으로서 간주되어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동협정의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5~2007.
- [2] EU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Directive 1995/46/EC, Directive 2002/58/EC)
- [3] 외교부, FTA 추진 로드맵, 2003. 8.
- [4] \_\_\_\_\_, 전략적 FTA 추진 현황 및 계획, 2007. 4.
- [5] 김세엽,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월간전경련, 2007. 7.